

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

(의안번호 제2914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2. 27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5. 2. 27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5. 3. 18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찬성의견

2. 제안설명의 요지(도시교통과장 이주열)

가. 제안이유

-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됨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내 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나. 청취내용

- 건 명: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
- 위 치: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686-5번지 일원(산업단지 등 제외)
- 면 적: 117,074㎡
- 주요내용
 - 공업지역 유형 설정
 -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
 - 건축물·기반시설 및 환경관리방안 수립 등

다. 청취경위

- 2024. 4. ~ 9.: 현황 분석 및 공업지역 실태조사

- 2024. 10. ~ 12.: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(안) 작성
- 2025. 2. ~ 3.: 공청회 공고 및 개최
- 2025. 3.: 군의회 의견 청취

3. 근거법률: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 및 제9조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제출 사유

-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,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주요 내용

[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개요]

(위 치) 고성읍 울대리 686-5번지 일원(산업단지 등 제외)

(면 적) 117,074㎡

(주요내용)

- 공업지역 유형 설정
-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
- 건축물·기반시설 및 환경관리 방안 수립 등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「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(’24. 8. 7.)에 따라 의무화된 고성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, 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과 향후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중점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
- 특히,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반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6. 토 론: 없음

7. 심사결과: 2025. 3. 18. 찬성의견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